

## 제12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 제12.1조 일반 원칙

1. 이 장은 당사국들 간의 특혜 무역 관계, 당사국들의 법규 및 부속서 12-가의 규정에 따라 기업인의 일시 입국을 촉진하고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대한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려는 당사국들의 공동의 희망, 그리고 국경 안전을 보장하며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국내 노동력과 영구적 고용을 보호할 필요성을 반영한다.
2.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시민권, 국적, 영구 거주 또는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고용에 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 또는 이 협정의 어떠한 다른 규정도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호하고 자국의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입국을 규제하는 조치의 적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12-가의 구체적 부문의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 또는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자연인에게 비자를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협정의 규정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제12.2조 일반 의무

각 당사국은 제12.1조에 따라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를 적용하며, 특히 이 협정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하도록 그 조치를 적용한다.

### 제12.3조 일시 입국의 허용

1.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 및 공중보건과 안전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과 같은 그 밖의 관련 조치를 준수하는 기업인의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
2. 이 장에 따라 허용되는 일시 입국은 그 일시 입국을 허가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구체적 법과 규정에 따라 직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요건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3. 기업인의 일시 입국이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당사국의 법규에 따라 그 인의 고용을 허가하는 입국서류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 가. 고용의 장소 또는 고용이 예정된 장소에서 진행 중인 노동분쟁의 해결, 또는

나. 그러한 분쟁에 관여된 인의 고용

#### 제12.4조 정보의 제공

1. 제18.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 가.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그러한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6개월 이내에, 이 장에 따른 기업인의 일시 입국 요건에 대한 설명자료를 준비, 공표, 그리고 공개한다.
2. 각 당사국은 입국 서류를 발급받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에 대하여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을 허용한 것에 관한 정보를 자국 법규에 따라 수집·보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쪽 당사국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이 자료에는 각 허가된 부문에 대한 특정 자료를 포함한다.
3. 접촉선<sup>1</sup>은 이 조항에 따른 정보 교환을 담당한다.

#### 제12.5조 분쟁해결

1.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은 이 장 또는 제12.2조에 따라 발생한 특정 사건에 따른 일시 입국 허용의 거절에 대하여 제22.4조(협의)에 따른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 가. 그 사인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는 경우, 그리고
  - 나. 관련 기업인이 부인하는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 특정 사안에 대해 이용 가능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
2. 권한 있는 당국이 행정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해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아니하였고,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그 기업인이 야기한 자체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나호에 언급된 구제조치들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 제12.6조 협력

제12.1조에 규정된 원칙을 고려하여, 당사국들은 가능한 다음을 노력한다.

- 가.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고 출입국 당국 간 기술적 협력을 촉진하는데 협력할 것, 그리고

---

<sup>1</sup> 중미의 경우, 접촉선은 제21.3조(접촉선)에 언급된 것을 말한다.

- 나. 생체인식기술이용, 사전승객정보시스템, 빈번출입국자 프로그램 및 여행문서 보안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는 출입국 분야 프로그램과 기술 규정 및 이행에 관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한다.

**제12.7조**  
**작업반**

1. 당사국들은 제3항에 따라 출입국 공무원과 접촉선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기업인의 일시 입국 작업반(이하 “작업반”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작업반은 필요한 경우, 이 장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
  - 나.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에 영향을 주는 조치에 대한 정보 교환을 위한 절차의 설치
  - 다. 기업인의 일시 입국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개발, 그리고
  - 라. 이 장에 관한 상호 관심이 있는 그 밖의 모든 조치
3. 작업반은 다음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 가. 한국의 경우, 법무부 체류관리과 대표
  - 나. 코스타리카의 경우, 대외무역부(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de Costa Rica), 노동 및 사회보장부(Ministerio de Trabajo y Seguridad Social), 그리고 출입국외국인총국(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y Extranjería)의 대표
  - 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경제부 무역협정운영국(Dirección de Administración de Tratados Comerciales del Ministerio de Economía), 이주출입국총국(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y Extranjería), 그리고 노동부(Ministerio de Trabajo)의 대표
  - 라. 온두라스의 경우, 경제개발부 협정 운영 및 교섭 총국(Dirección General de Administración y Negociación de Tratados de la Secretaría de Estado en el Despacho de Desarrollo Económico,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ón), 국립이주원(Instituto Nacional de Migración) 그리고 노동 및 사회보장부(Secretaría de Estado en el Despacho de Trabajo y Seguridad Social)의 대표
  - 마. 니카라과의 경우, 산업통상개발부(Ministerio de Fomento, Industria y Comercio), 이주출입국총국(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y Extranjería), 그리고 노동부(Ministerio del Trabajo)의 대표, 그리고
  - 바. 파나마의 경우, 산업통상부 국제무역협상과(Oficina de Negociaciones Comerciales Internacionales del Ministerio de Comercio e Industrias)의 국립이주사무소(Servicio Nacional de Migración) 대표

또는 그들의 승계인

## 제12.8조 다른 장과의 관계

1. 이 장, 제1장(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18장(투명성), 제21장(제도 규정), 제22장(분쟁 해결), 제23장(예외), 그리고 제24장(최종규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출입국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에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다른 장에 대하여 의무나 약속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12.9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상업적 활동**이란 시장에서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수행 및 운영되는 합법적인 상업적 활동을 말하나, 일시 입국을 허용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노동력으로부터 고용, 임금 또는 보수를 얻을 가능성을 포함하지는 아니한다.

**기업인**이란 상품무역, 서비스 공급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국민을 말한다.

**임원**이란

- 가. 조직 또는 관련 부분 또는 그 내부 기능의 경영을 지휘하고,
- 나. 조직, 관련 부분 또는 기능의 정책과 목적을 수립하며, 그리고
- 다. 고위급 임원, 조직의 이사회 또는 행정협의회, 또는 회사 주주로부터만 감독 또는 일반적 지시를 받는 기본적 책임을 가지는 인을 말한다.

**관리자**란

- 가. 조직 또는 조직의 부서 또는 그 하위구분을 지휘하고,
- 나. 그 밖의 전문 피고용인, 감독직 또는 관리직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 다. 채용 및 해고 권한이나 그러한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직원들의 인사 관리와 관련된 그 밖의 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는 권한, 그리고 조직의 지배층 내의 고위급 기능 또는 자신의 위치와 관련된 기능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리고
- 라. 자신이 권한을 가진 기능의 일상적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량권을 행사하는 기본적 책임을 가지는 인을 말한다.

**반복된 관행**이란 그러한 관행의 집행 직전에 대표성이 있는 기간 동안 당사국의 출입국 당국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수행된 관행을 말한다.

**전문가**란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그리고 국제 시장에의 적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업의 과정과 절차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나 지식을 가진 인을 말한다.

**일시 입국**이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영구적 거주의 의도 없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 부속서 12-가 기업인의 일시 입국

### 제1절 상용 방문자

1.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부록 12-가-1에 규정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려는 기업인에게는 다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시 입국을 허용하고 문서를 확인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 국적의 증명
- 나. 그 기업인이 이 부속서의 부록 12-가-1에 규정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할 것임을 입증하고 입국의 목적을 기술하는 문서, 그리고
- 다. 제안된 상용 활동의 범위가 국제적이고, 그 기업인이 현지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증거

2. 각 당사국은 기업인이 다음을 입증함으로써 제1항다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규정한다.

- 가. 제안된 상업적 활동의 주된 수입원이 일시 입국을 허용하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 그리고
- 나. 기업인의 주 영업소 및 실제 이윤 발생 장소가 대부분 그러한 영역 밖에 있다는 것

이 항의 목적상, 일시 입국을 허가하는 당사국은 주 영업소와 실제 이윤 발생 장소에 대한 신고를 통상 수용한다. 당사국이 요구하는 추가 증명은 자국 법규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어떠한 당사국도

- 가. 제1항에 따른 일시 입국 허가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절차, 청원, 노동증명테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거나,
- 나. 제1항에 따른 일시 입국과 관련하여 수량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4. 당사국은 이 절에 따라 일시 입국을 요청하는 기업인에게 입국 전에 비자 또는 그와 동등한 요건을 얻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2절 무역업자 및 투자자

1. 각 당사국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기존의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고 다음을 하려는 기업인에게 일시 입국을 허용하고 확인 문서를 제공한다.

가. 주로 해당 기업인이 국민인 당사국의 영역과 입국하려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사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당한 무역을 수행하는 것, 또는

나. 자국 법규에 따라 해당 기업인 또는 그 기업인의 기업이 상당한 금액의 자본 투자를 약정했거나, 약정하는 과정에 있는 투자를 설립, 개발 또는 운영하는 것

2. 어떠한 당사국도

가. 제1항에 따른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노동증명테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거나,

나. 제1항에 따른 일시 입국과 관련하여 수량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3. 당사국은 이 절에 따라 일시 입국을 요청하는 기업인에게 입국 전에 비자 또는 그와 동등한 요건을 얻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기업 내 전근자**

1. 각 당사국은, 일시 입국을 허용하는 당사국의 기업<sup>2</sup> 또는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가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근된 다른 쪽 당사국 기업의 피고용 기업인이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는 경우, 일시 입국을 허용하고 확인문서를 제공한다. 당사국은 그 기업인에게 일시 입국 신청일 직전의 3년 내에 1년동안 그 기업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고용되었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당사국은 기업 전근자를 승인하는 기업으로부터의 문서, 그리고 그 전근자가 수행할 역할이 이전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노동법 또는 직업 활동에 적용 가능한 법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당사국은 이 절에 따라 일시 입국을 요청하는 기업인에게 입국 전에 비자 또는 그와 동등한 요건을 얻도록 요구할 수 있다.

---

<sup>2</su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시 입국을 허용하는 당사국의 기업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그 당사국에 설립하는 지사를 포함한다. 다만 그 지사가 그러한 당사국의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등록되는 경우여야만 한다.

## 부록 12-가-1

### 상용 방문자

#### 연구

- 독립적인 연구 또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설립된 기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술, 과학 및 통계 연구원

#### 회의 및 협의

- 회의,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에 참석하거나, 특히 기술, 과학 또는 사회적 분야에서 협의를 수행하는 기업인

#### 제배, 제조 및 생산 구매

-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설립된 기업을 위하여 상업적 거래를 수행하는 관리자급의 구매 및 생산 인력

#### 마케팅

- 독립적인 연구 또는 분석, 또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설립된 기업을 위한 연구 또는 분석을 수행하는 시장 연구원 및 분석가
- 무역 컨벤션 또는 박람회에 참가하는 홍보 인력

#### 판매

-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설립된 기업을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는 아니하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주문을 받거나 계약 협상을 하는 판매 대표자 및 대리인
-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설립된 기업을 위하여 구매를 행하는 바이어

#### 판매 후 서비스

- 판매자의 계약상 의무에 필수적인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일시 입국을 요청 받은 당사국의 영역 밖에 위치한 기업에 의하여 구입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업적 또는 산업적 장비 또는 기계의 판매에 부수적인 보증서 또는 그 밖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 그 보증 또는 서비스 계약 기간 동안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피고용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훈련시키는, 설치 · 수리 및 유지 인력과 감독자

#### 일반 서비스

-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설립된 기업을 위하여 상업적 거래에 참여하는 관리 및 감독 인력
-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설립된 기업을 위하여 상업적 거래에 참여하는 금융서비스 인력.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상업적 활동은 입국을 허용하는 당사국의 금융사안 법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기업 관계자와 협의하거나 컨벤션에 참석 또는 참여하는 홍보 및 광고 인력
- 컨벤션에 참석하거나 참여하는 관광 인력(관광 및 여행사 직원, 여행 가이드 또는 여행 업자)
- 당사국 법규에 따라 인정된 번역가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위치한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번역가 또는 통역가

## 부록 12-가-2 기존의 출입국조치

다음의 출입국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으로 이하에 열거된다.

### 한국의 경우

- 가. 법률 제13440호 「출입국관리법」 및 그 개정사항, 2015.7.24

### 코스타리카의 경우

- 가. 「이주 및 출입국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Migración y Extranjería) 및 그 규정과 개정사항, 2009.8.19

### 엘살바도르의 경우

- 가. 입법부 법령 제2772호에 의하여 승인된 「이주법」 (Ley de Migración) 및 그 개정사항, 1958.12.19
- 나. 행정부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승인된 「이주법에 관한 규정」 (Reglamento de la Ley de Migración) 및 그 개정사항, 1959.3.9, 그리고
- 다. 입법부 법령 제299호에 의하여 승인된 「출입국법」 (Ley de Extranjería) 및 그 개정사항, 1986.2.18

### 온두라스의 경우

- 가. 법령 제208-2003호에 의하여 승인된 「이주 및 출입국법」 (Ley de Migración y Extranjería) 및 그 개정사항
- 나. 행정협정 제018-2004호에 의하여 승인된 「이주 및 출입국법에 관한 규정」 (Reglamento de la Ley de Migración y Extranjería) 및 그 개정사항, 그리고
- 다. 협정 제21-2004호 및 그 개정사항

### 니카라파의 경우

- 가. 2011.3.31 법률 제761호 「이주 및 출입국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Migración y Extranjería) 및 그 개정사항, 그리고
- 나. 2012.9.20 법령 제31-2012호 법률 제761호 「이주 및 출입국에 관한 일반법에 대한 규정」 (Reglamento a la Ley N°761, Ley General de Migración y Extranjería) 및 그 개정사항

### 파나마의 경우

- 가. 「국립이주사무소의 설립 근거가 되는 2008.2.22 법령 제3호 이주 기록과 그 밖의 규정」 (Decreto Ley 3 del 22 de febrero de 2008 que crea el Servicio Nacional de Migración, la Carrera Migratoria y dicta otras disposiciones) 및 그 개정사항, 그리고

- 나. 「 2008.2.22 법령 제3호를 규율하는 2008.8.8의 행정부 법령 제320호 」  
(Decreto Ejecutivo No. 320 del 8 de agosto de 2008 que reglamenta el Decreto Ley 3  
del 22 de febrero de 2008) 및 그 규정과 개정사항